

- 신축의 경우 비교적 공사소요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 고려하여 유예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, 완화대상이 토지임을 명확화하는 등 사후관리 합리화
- (⑦) 재외 외교관 자녀 기숙사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장기간 감면('87년 도입), 최근 10년간 취득세 감면 실적이 없는 등을 고려하여 감면 종료